「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안」 **심 사 보 교 서**

조례심사특별위원회

「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안」 **심 사 보 고 서**

1. 심 사 경 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1. 12. 6(화) 평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11. 12. 19(월)

다. 상정일자 : 2011. 12. 20(화) 제1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

제1차 조례특위 상정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: 주민생활지원실장)

○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에 따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고령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: 장동기)

○ 본 조례안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에 대처하고 출산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생아 및 입양아에 대한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는 조례안임.

- 주요 내용을 보면
 - 지원대상은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부모로 하였고
 - 출생순위에 따라 1인당 100만원 씩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음.
- 본 조례안은 출산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산축하금을 지급하려고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
 - 주민들에 대한 복지수혜 효과는 클 것으로 기대는 되나, 비용추계서에 나타났듯이 연 4~6억원 가량 예산이 수반될 것 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.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- 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- 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- 7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
 - 【붙임】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안 1부